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50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김소희·유용원·조승환
김승수·조경태·이종배
김기웅·박준태·조은희
김상훈·권영진·조배숙
박정하·김용태·윤영석
박정훈·이현승·김미애
조지연·서범수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직된 감축 목표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2030년까지”를 “2050년까지”로, “35퍼센트 이상의 범위”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u>2030년까지</u>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u>35퍼센트 이상의 범위</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u><단서 신설></u>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 <u>2050년까지</u> ----- ---- <u>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u> <u>수준</u> ----- ----- ----- ----- - <u>다만,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